

미국 담배소송의 사례 분석과 향후 전망

소성섭*

KT&G 연구원

(2010년 5월 14일 접수 ; 2010년 5월 28일 수정 ; 2010년 6월 4일 송인)

The Analysis and Prospect of Tobacco Litigation in U.S.

Seong-Seop Soh*

KT&G Research Institute

(Received May 14, 2010; Revised May 28, 2010; Accepted June 4, 2010)

1954년 Saint Louis 주에서 미국 최초의 담배소송¹⁾이 제기된 이래 현재까지 개별소송과 집단소송을 포함하여 대략 8,000여건의 흡연관련 소송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 중 1심 내지 배심원 평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불과 18여건에 지나지 않는다면다가 원고 승소 판결은 담배회사의 상소를 통해 대부분 번복되었거나 또는 여전히 상급 법원의 심리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Boeken Case²⁾나 Carter Case³⁾ 등 10여건으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불과하다. 물론, 1990년대 이후에는 집단소송의 활성화와 함께 담배의 유해성이나 중독성에 관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소비자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담배회사의 내부문서가 공개되는 등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남으로써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원고가 승소하는 사례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조차도 결국 상급심에서 원고 집단의 부적격성이나 손해배상액의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담배회사의 책임이 번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최종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상황에는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언론을 통해 미국 담배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승소사례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것은 어찌면 이와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외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미국 담배소송에서 이와 같은 기본적 상황이 조만간에 변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이 과도한 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줌에 따라 앞으로는 담배소송을 제기할 유인 자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 Lowe v. R. J. Reynolds Tobacco Co., No. 9673(C) (E.D. Mo., filed Mar. 10, 1954).

2) Boeken v. Philip Morris Inc., 127 Cal. App. 4th 1640 (Cal. App. 2d. 2005)

3) Carter v. Brown & Williamson Tobacco Corp., No. 95-934-CA, 1996 WL 566108 (Fla. Cir. Ct. 1996).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번복되었으나 [Williamson Tobacco Corp. v. Carter, 723 So. 2d 833 (Fla. 1st D.C.A. 1998)], 이후 상고심은 항소심을 재 번복하여 원고 승소를 확정하였다[Carter v. Brown & Williamson Tobacco Corp., 778 So. 2d 932 (Fla. 2000)].

*연락처 : 305-805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302 번지, KT&G 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KT&G Research Institute, 302 Shinseong-dong, Yuseong-gu, Daejeon 305-805, Korea
(phone: 82-42-866-5662; fax: 82-42-861-1949; e-mail: sohss@ktng.com)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 담배소송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앞으로 미국 담배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망해보고자 한다.

개인소송(Individual lawsuits)

미국 담배소송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례는 개인소송의 형태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개인소송은 전형적인 소비자피해 배상소송으로서, 흡연자 개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개인소송의 경우 청구원인으로서는 불법행위, 제조물책임 등을 원용하고 있거나, 원고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흡연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담배의 결함 또는 위험성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에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 2010년 8월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개인소송 형태의 담배소송은 약 250여건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입증의 어려움이나 소송전략 부족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따라서 개인소송 형태의 담배소송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집단소송(Class action)

집단소송 형태에 의한 담배소송의 문제점

개인소송 형태로 진행되는 담배소송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피고 당사자간 실질적인 무기평등의 원칙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등장한 것이 집단소송 형태의 담배소송이다. 왜냐하면 집단소송 형태를 취함으로써 자원과 전략의 협동이라는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⁴⁾

그러나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되는 담배소송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먼저, 흡연 피해자 집단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23조 (a)항에 의하면 집단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다수성(numerosity)⁵⁾, 청구의 공통성(commonality)⁶⁾, 분쟁의 전형성(typicality)⁷⁾, 대표의 적절성(adequacy of representative)⁸⁾과 같은 선결조건이 필요한데, 담배소송의 경우에는 특히 각각의 구성원이 입은 손해와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표당사자의 청구나 그에 대한 항변이 당해 소송에서 전형적인 것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다.⁹⁾ 또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 (b) 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든 원고들에 대하여 공통되는 법리나 사실관계가 다른 개별적 이해관계에 비하여 현저하게 중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이러한 개별적 이해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발견 된다.¹⁰⁾ 현재까지는

- 4) Howard M. Erichson, *Toxic Torts: Issues of Mass Litigation, Case Management and Ethics Articles*, 26 Wm. & Mary Envtl. L. & Pol. Rev. 123, 124 (2001).
- 5) 일반적인 공동소송이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분쟁해결수단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당사자가 다수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이러한 다수성의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 6) 구성원들의 청구 사이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다만, 모든 구성원의 문제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유사성만 인정되면 집단의 성립이 인정된다.
- 7) 대표당사자의 청구나 항변이 당해 집단의 청구나 항변의 전형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여기서 "전형적"이란 완전한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당히 동일할 것이 요구된다.
- 8) 집단의 이익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자가 대표당사자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이러한 적절성 요건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9) Andrei Sirabionian, *Why Tobacco Litigation Has Not Been Successful in the United Kingdom: A Comparative Analysis of Tobacco Li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25 Nw. J. Int'l. L. & Bus. 494-495(2004-2005).
- 10) Castano v. American Tobacco Co., 84 F. 3d 734 (5th Cir. 1996).

담배소송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원고 집단의 성립을 인정한 연방법원 차원의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단지 몇몇 주법원이나 극히 일부의 연방지방법원에서만 원고 집단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보이는 바, 담배소송에 있어서는 원고 개개인의 개별적 이해관계가 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재판의 효율적인 운용과 적법절차의 보장을 위하여 원고 집단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사실상 연방항소법원의 통일적인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¹¹⁾

다른 한편으로, 통상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배심의 역할을 가급적 제한하려 하기 때문에,¹²⁾ 특히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수의 원고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담배소송의 경우에 법원은 이를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¹³⁾ 그리고 집단소송에서는 각각의 구성원에 특유한 문제점들이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개인소송의 형태에 의했을 경우보다도 승소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¹⁴⁾

이상과 같은 집단소송의 형태에 의한 담배소송의 문제점이 잘 나타나고 있는 사례로는 Castano Case, Engle Case, Price Case를 들 수 있다.

Castano Case¹⁵⁾

Castano Case는 집단소송과 함께 담배의 중독성 자체를 흡연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 집단은 미국 전역의 흡연자들

로 구성되었던 바, 이들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허위표시를 함으로써 담배의 중독이라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당시 담배의 중독성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담배에 중독된 것 자체가 손해라고 주장함으로써 위험인수의 항변 등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 주장에 대해 1심 법원은 집단소송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법원이 각 주 법률 사이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소송 절차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단지 개개인에게 흡연의 중독성에 관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집단의 공통성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개개인의 개별적 이해관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해결함으로써 절차상 효율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사실관계나 증거관계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집단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손해배상소송이 무분별하게 제기됨으로써 법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에 비해 원고 집단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 담배회사가 감수하여야 할 절차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원고 집단은 구성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¹⁶⁾

이러한 판결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 11) 담배소송에 있어서 원고 집단의 성립을 부정한 연방법원의 판결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Castano v. American Tobacco Co., 84 F.3d 734 (5th Cir. 1996) Arch v. American Tobacco Co., 175 F.R.D. 469 (E. D. Pa. 1997) Smith v. Brown & Williamson Tobacco Corp., 174 F.R.D. 90 (W. D. Mo. 1997) Barnes v. American Tobacco Co., 161 F.3d 127 (3rd Cir. 1998) Insolia v. Philip Morris Inc., 186 F.R.D. 535 (W. D. Wis. 1998) Clay v. American Tobacco Co., 188 F.R.D. 483 (S. D. Ill. 1999) Chamberlain v. American Tobacco Co., 70 F. Supp. 2d 788 (N. D. Ohio. 1999) 등.
- 12) Brian H. Barr, *Engle v. R.J. Reynolds: The Improper Assessment of Punitive Damages for an Entire Class of Injured Smokers*, 28 Fla. St. U. L. Rev. 799 (2001).
- 13) Castano v. American Tobacco Co., 84 F. 3d 734 (5th Cir. 1996).
- 14) Susan E. Kearns, *Decertification of Statewide Tobacco Class Actions*, 74 N.Y. U. L. Rev. 1347 (1999).
- 15) Castano v. American Tobacco Co., 870 F. Supp. 1425 (E. D. La 1994).
- 16) Castano v. American Tobacco Co., 84 F. 3d 734 (5th Cir. 1996).

해 이후 각 주별로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분쟁의 전형성이나 개별적 이해관계의 중요성을 이유로 집단의 구성이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담배의 중독성이 흡연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단되지 않았다.

Engle Case¹⁷⁾

Engle 사건은 미국 담배소송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의 정별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이다.¹⁸⁾ 이 사건에서 원고 집단을 구성한 것은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는 500,000명 이상의 흡연자들로서, 이들은 담배회사의 기망적 행위와 제조물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담배회사에 대해 1,448억 달러의 정별적 손해배상을 명하였다.¹⁹⁾

하지만, 항소심은 이러한 배심원단의 결정을 번복하여, 이 사건의 원고 집단은 그 구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집단 전체의 이해관계보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의 공통성도 인정되기 어렵고, 나아가 배심원단이 결정한 정별적 손해배상액 역시 지나치게 과다하여 연방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다.²⁰⁾

최근 내려진 플로리다 주대법원 판결에서도 결론적으로는 항소심의 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²¹⁾

먼저 원고 집단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플로리다 주대법원은 항소심이 원고 집단의 구성을 무효화한 것은 플로리다 주의 민사소송법상 위법한 것이라는 하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 집단을 구성하

는 개개인 사이에서도 흡연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흡연을 시작하게 된 경위 및 손해의 정도 등이 무척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집단 전체의 이해관계보다도 훨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결국에는 원고 집단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정별적 손해배상의 액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심리를 진행함에 있어 (i) 원고 집단 전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여부 및 정별적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검토, (ii) 집단 대표자 개개인에 대한 전보배상(compensatory damage)액 및 원고 집단 전체에 대한 정별적 손해배상액에 관한 검토, (iii) 각 집단 구성원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여부 및 전보배상액에 관한 검토의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었는데,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State Farm Case²²⁾를 인용하면서 구체적인 전보배상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별적 손해배상액의 합리성을 평가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의 정별적 손해배상액 결정은 적법절차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Engle Case는 집단소송 형태의 담배소송에서도 흡연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Price Case²³⁾

Price Case는 이전의 Castano Case나 Engle Case와 달리 포장지에 "Lights"내지는 "low tar"

17) R. J. Reynolds Tobacco Co v. Engle, 672 So. 2d 39 (Fla. Dist. Ct. App. 1996).

18) Brian H. Barr(주 12), 788.

19) Marc Kaufman, *Tobacco Suit Award: \$145 Billion - Florida Jury Hands Industry Major Setback*, Washington Post, July 15 (2000).

20) Liggett Group, Inc. v. Engle, 853 So. 2d 434 (Fla. 3d D.C.A. 2003).

21) Liggett Group, Inc. v. Engle, No. SC03-1856, 2006 WL 1843363 (Fla. 2006).

22)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urance Co. v. Campbell, 538 U.S. 408 (2003).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피해자의 손해와 관련이 없는 가해자의 행위를 근거로 정별적 손해배상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면서, 원칙적으로 정별적 손해배상액이 전보배상액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담배소송에 있어서도 이러한 판시를 근거로 정별적 손해배상액의 적절성이 다투어질 것으로 보인다.

23) Price v. Philip Morris Inc., No. 00-L-112, 2003 WL 22597608 (Ill. Cir. 2003).

등의 문구가 기재된 담배를 구입한 흡연자들에 의해 제기된 집단소송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즉, 이 사건에서 원고 집단은 담배회사가 담배 포장지에 "Lights" 등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마치 그것이 덜 해로운 담배라는 인상을 받았고 이에 기망 당하여 담배를 구입하였으므로 담배구입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 집단의 성립을 인정하며 71억 달러의 전보배상과 함께 3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하였으나²⁴⁾,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담배포장지에 "Lights" 등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집단을 구성하는 100만 명 이상의 개인들은 그 흡연 행태나 습관이 제각각이어서 "Lights" 등의 문구를 기재한 행위와 담배의 구입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²⁵⁾

이 사건에서는 특히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1971년 American Brands사에 대해 담배 광고에 있어서 타르와 니코틴 함량을 밀리그램 단위로 정확히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 "low tar"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동의 명령(consent order)²⁶⁾과, 1995년 American Tobacco사에 대해 타르나 니코틴의 함량을 "몇 배"와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타르나 니코틴의 함량을 나타내는 것 자체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한 동의명령이 문제되었다. 소비자 사기·기망 처벌법(Consumer Fraud and Deceptive Business Practices Act)이나 사기거래 방지법(Deceptive Practices Act)에 의하면 행정기관에 의해 부과된 명령에 의한 행위는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위와 같은 동의명령이 행정기관에 의해 부과된 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그에 따라 "Lights" 또는 "low tar" 문

구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와 같은 동의명령은 담배회사가 "Lights" 또는 "low tar"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1971년과 1995년에 내려진 동의명령은 직접 당사자가 이외의 담배회사 전체에 대해서도 묵시적인 행위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피고 Philip Morris사도 위 동의명령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²⁷⁾

한편, 최근 일리노이 주대법원은 위 판결에 대한 재심리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²⁸⁾

구상금청구소송 (The Master Settlement Agreement)

구상금청구소송 형태로 이루어진 담배소송은 각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관련 질환에 대해 지출된 건강보험금 등의 구상을 청구하는 것이었다.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주정부는 담배회사가 공모하여 담배의 유해성을 은닉하는 등 소비자를 기망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며 담배회사들에 대해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바, 이러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비롯하여 담배사업에 대한 주정부의 각종 규제에 부담을 느낀 담배회사들은 결국 주정부와의 화해에 이르게 된다.²⁹⁾ 즉, 1998년 미국 46개 주정부와 주요 담배회사들 사이에 기본협약(MSA: Master Settlement Agreement)이 체결된 것이다.

MSA가 체결됨에 따라, 담배회사들은 주정부로부터의 모든 소송을 면제받는 대신 향후 26년간 주정부에 2,060억 달러를 지불하게 되었다. 담배회사가 지불하는 금전은 주로 흡연 관련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운영과 청소년의

24) id.

25) Price v. Philip Morris, Inc., 219 Ill.2d 182 (Ill. 2005).

26) 연방통상위원회가 피조사인과의 합의안을 공식명령으로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27) Price v. Philip Morris, Inc., 219 Ill.2d 253-267 (Ill. 2005).

28) Price v. Philip Morris, Inc., 846 N.E.2d 597 (Ill. 2006).

29) 그 자세한 배경에 관해서는, Shital A. Patel, *The Tobacco Litigation Merry-Go-Round : Did the MSA Make it Stop?*, 8 DePaul J. Health Care L. 615, 625-627 (2005) 참고

흡연을 감소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 및 홍보 활동의 실시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MSA를 통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배상금을 직접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이 외에도, 담배 판매 및 광고의 규제, 관련 정보의 공개 등이 MSA의 주요 내용이다.³⁰⁾

MSA는 본질적으로 주정부와 주요 담배회사 사이의 협약으로서, MSA에 의해 면책되는 것은 주정부에 의한 소송일 뿐이고 이외에 개인소송이나 집단소송까지 면제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MSA 이후에도 개인소송 형태의 담배소송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³¹⁾ 또한, MSA의 체결이 담배회사 스스로 담배의 제조·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³²⁾ MSA에도 불구하고 담배소송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맺 음 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담배소송의 대부분이 미국의 담배소송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담배소송은 특히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담배소송이 활발한 원인으로는, 후불제 성공보수방식의 변호사 수임계약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점,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소송을 통한 정별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 집단소송 제도가 일찍부터 발전하여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 배심원단에 따라서는 감정적이

고 편견에 치우친 평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각 주별로 법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주에서는 담배소송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³³⁾,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개인적 책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적 차원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미국에서의 담배소송은 미국 소송제도의 특수성과 독특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결합된 산물인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담배소송 역시 원고들 입장에서 볼 때 전망이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다. 특히, 1심에서의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적절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바, 최근에는 담배소송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적절성에 관하여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상급심의 판단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³⁴⁾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적절성 여부는 담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담배소송을 제기할 유인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최근 Williams Case³⁵⁾에서 7,95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재검토 해달라는 담배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는바, 그 결론은 미국사법체계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역할에 관한 분수령적인 판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원이 집단소송 형태의 담배소송에 있어서 원고 집단의 구성을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 역시 담배소송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³⁶⁾

결국, 수십 년에 걸쳐 전개되어 온 미국의 담배

30) MSA의 전문은, <http://academic.udayton.edu/health/syllabi/tobacco/cigmsa.rtf> 참고

31) Shital A. Patel(주 52), 660-661.

32) MSA I. RECITALS … WHEREAS, defendants have denied each and every one of the Settling States' allegations of unlawful conduct or wrongdoing and have asserted a number of defenses to the Settling States' claims, which defenses have been contested by the Settling States;

33) 2002년 4월까지 진행된 담배소송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례 중 13건 가운데 플로리다·캘리포니아 및 오리건주에 9건의 사례가 집중되어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34) Schwarz v. Philip Morris Co., CA No. A118589 (Or. App. Ct. 2006) Liggett Group, Inc. v. Engle, No. SC03-1856, 2006 WL 1843363 (Fla. 2006).

35) Philip Morris USA v. Williams, 126 S.Ct. 2329 (2006)

36) 이러한 경향은 앞에서 검토한 Castano Case와 Engle Case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III. 2. 참조

소송은 집단소송의 활성화와 아울러 담배회사가 소비자에 대해 담배의 위험성에 관해 은폐하였다 는 증거가 밝혀지면서 몇몇 사건에서 담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일대 전기를 맞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최종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상황에는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도, 흡연과 신체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반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나아가 법률상 허용된 제품인 담배를 제조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받기도 어려운데다가, 흡연의 피해는 소비자 스스로 담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흡연을 계속하였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라고 여겨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최근 콜롬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의 Gladys Kessler 판사는 담배 포장지에 "Lights"나 "low tar" 등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담배가 가지는 중독성 등의 악영향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으로서 부정부패조직범죄방지법(RICO: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³⁷⁾ 이 판결은 담배회사들로 하여금 정정광고제재, 마케팅 자료 공개, 업무처리 절차의 점검 및 변경, 금연 활동의 지원 및 홍보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면서도, 위법행위에 따른 금전적인 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위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입법적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담배회사들에 대해 위와 같은 조치를 명한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점도 지적

되고 있는바, 현재 담배회사들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고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Erichson, T. H. (2001) Toxic Torts: Issues of Mass Litigation. *Case Management and Ethics Articles 26*, Wm. & Mary Envtl. L. & Pol. Rev.
- Sirabionian, A. (2004-2005) Why Tobacco Litigation Has Not Been Successful in the United Kingdom: A Comparative Analysis of Tobacco Li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Nw. J. Int'l. L. & Bus.* 25
- Barr, B. H. (2001) Engle v. R.J. Reynolds: The Improper Assessment of Punitive Damages for an Entire Class of Injured Smokers. *Fla. St. U. L. Rev.* 28.
- Kearns, S. E. (1999) Decertification of Statewide Tobacco Class Actions. *N.Y. U. L. Rev.* 74.
- Kaufman, M. (2000) Tobacco Suit Award: \$145 Billion - Florida Jury Hands Industry Major Setback. *Washington Post*, July 15.
- Patel, S. A. (2005) The Tobacco Litigation Merry-Go-Round : Did the MSA Make it Stop? *DePaul J. Health Care L.* 8.

37) United States of America v. Philip Morris USA, Inc., No. CIV.A. 99-2496 GK, 2006 WL 2380622 (D.D.C. 2006).